

# 당진상공회의소

지역은 기업사랑 기업은 지역사랑

우 31778 당진시 남부로 256(수청동 1071)/전화:(041)357-2500/전송:(041)357-2503  
 Homepage : dangjincci.korcham.net / E-mail : [dangjin@korcham.net](mailto:dangjin@korcham.net) / 담당자 : 김경룡과장

문서번호 당상관 제 107 호

시행일자 2020. 11. 24.

경 유

수 신 회원사 대표이사

참 조 총무(관리)부서장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		결재공람	
	시간 번호			
처리과				
담당자				

## 제 목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협조요청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진정보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「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도제학교」 사업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사 업 명 :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도제학교
2. 운영기관 : 당진정보고등학교
3. 담 당 자 : 도제교육부장 김현미 선생님(010-7307-7497)
4. 사업내용 : 붙임 참고



※ 첨 부 :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안내(요약) 1부. 끝.

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이 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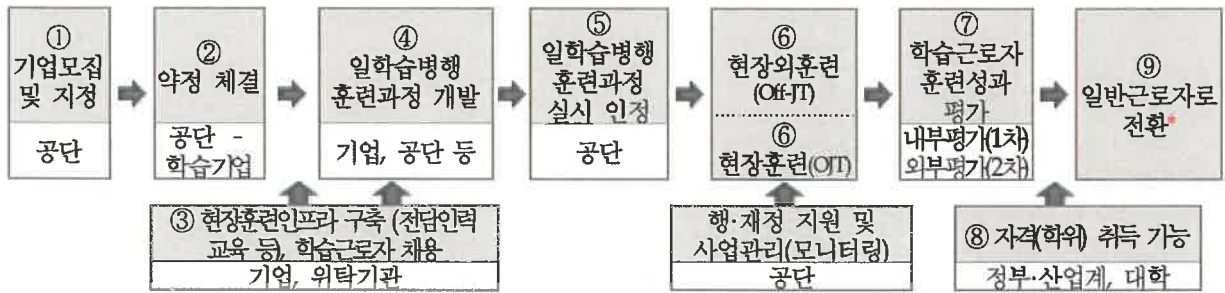


# 2021학년도 일학습 병행 사업 안내[요약]

당진정보고등학교 일학습병행(도제교육부)

## 1. 사업 개요

가. 일학습 병행이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'학습근로자'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(1년~4년)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,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(또는 해당 산업계)가 평가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한 사업입니다.



## 나. 참여유형: 재학생단계

구분	주요 특징	관리주체	Off-JT	OJT
재학생 단계	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(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유니테크) 또는 전문대 재학생(전문대 재학생단계), 4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(IPP형) 대상으로 실시	기업, 참여학교	참여학교	기업

재학생 단계: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되며, 그 중 본교와의 협약은 고교단계입니다.

재학생 대상	명칭	주요 내용
<고교 단계> 특성화고 2~3학년	산학일체형 도제학교	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+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

## 2. 기업 지원내용(단, 학습근로자 1인일 경우) : 훈련직종 - 세무·회계정보관리\_L3과정

항목	세무내용		지원금	받는자
OJT훈련지원금	4,000원 * 1.7(유형별지원율) * 429H * 1명		2,917,200원	사업주
훈련지원금 (인건비지원)	400,000원	4개월 (2021.3.~2021.6.)	5,600,000원	사업주 (2020.6.~2021.6.)
	200,000원	20개월 (2021.7.~2023.2.)		
기업현장교사수당	333,000원	24개월	7,992,000원	기업현장교사
HRD담당자수당	250,000원	24개월	6,000,000원	기업HRD담당자
기업현장교사 (심화연수이수자)	100,000원	24개월	2,400,000원	기업현장교사
총 지원금			24,909,200원	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사업과 중복OK

## 3. 훈련지원내역

훈련과정개발지원	과정별 957,600원 = 훈련과정개발 684,000원 + 학습도구수당 273,600원 학습근로자 1인 333,000원, 2인 416,000원, 3인 500,000원
기업현장교사 수당	※ 필수 + 심화교육(매월 10만원 추가 지급) → 기본과정:46H(온라인 15H + 집체 4일,31H)/심화:37H(온라인 21H + 집체16H(일))
HRD 담당자 수당	월 250,000원(정액지급) - 온라인 5H + 집체 8H(1일)

#### 4. 신청·접수 관련 사항

참여신청 →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→ 지정 및 약정체결

##### 가. 참여기준

- 1)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인력 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
(20인 미만 기업은 전문지원센터로부터의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)
- 2) 참여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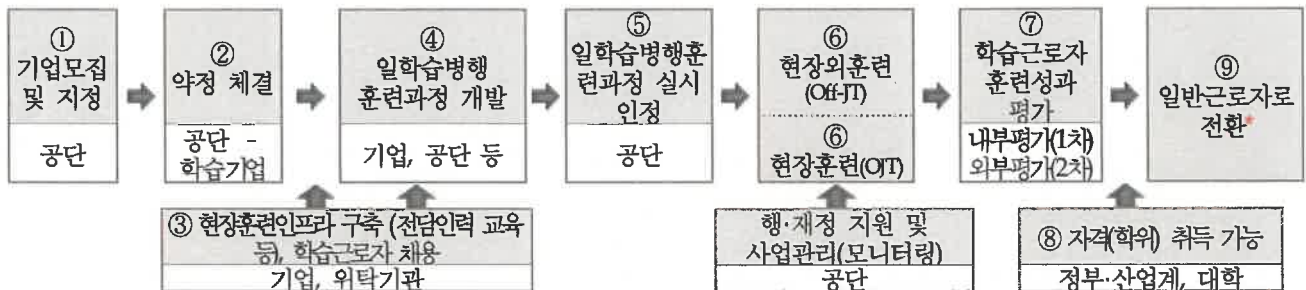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-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(단,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,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)
-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-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
-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(근로시간)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

- 3) 서류심사: 아래 요건에 따라 적합/부적합 여부 판정

→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, CEO 의지(적정임금, 근로시간, 훈련실시, 교육연수), 기업여건의 적절성(임금체불, 산재다발, 행정처분, 상시근로자 수 20인이상 단, 추천서 발급기업은 5인이상 가능)

- 4) 현장실사: 공단과 일정협의를 거쳐 실제 훈련실시 예정 장소를 확인
  - 이유 불문 현장확인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 판정
  - 현장실사단 구성: 외부전문가 + 공단 직원1인
  - 점검항목: 기업 현황, 운영계획, 훈련시설 장비 등 종합 점검

#### 5.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



※ 일반근로자로 전환 :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 (제24조) 및 위반시 불이익 (제42조)

사업주는 '20.8.28.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부터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'필수

제24조(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)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

제42조(과태료)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